문화 창조 역량 강화와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 국어발전기본계획

2007

국립국어원

문화 창조 역량 강화와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 국어발전기본계획

2007

국립국어원

# 차례


Ⅰ.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의의와 구성 내용 ····· 5

Ⅱ. 국어 환경의 분석과 진단 ····· 7
1. 국어 환경의 분석 8
2. 부문별 진단 9

Ⅲ.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 13
1. 기본 방향 14
2. 추진 목표 14

Ⅳ. 3대 중점 추진 과제 ····· 15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연수 체계 정비 17
2.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20
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26

Ⅴ. 10대 추진 과제 ····· 29
1.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31
2. 남북 언어 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35
3.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 37
4.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40
5.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 46
6.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49
7.「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52
8. 국어 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54
9.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58
10.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62

Ⅵ. 추진 조직 체계 ····· 67

Ⅶ. 연차별 재정 투자 계획 ····· 69
※ 참고 자료 ····· 71
※ 〈부록〉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 ····· 75

# Ⅰ.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의의와 구성 내용

# Ⅰ.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의의와 구성 내용

## 기본 계획의 의의 및 성격

-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법정 계획
- 국가 언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10개 부문별 국어진흥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계획
- 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 수립과 시행의 준거가 되는 지침 계획

## 계획 기간 : 2007년~2011년

## 기본 계획의 주요 구성 내용

- 국내외의 국어 환경의 분석과 진단
-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와 부문별 추진 과제
- 추진 조직 체계와 연차별 재정 투자 계획

##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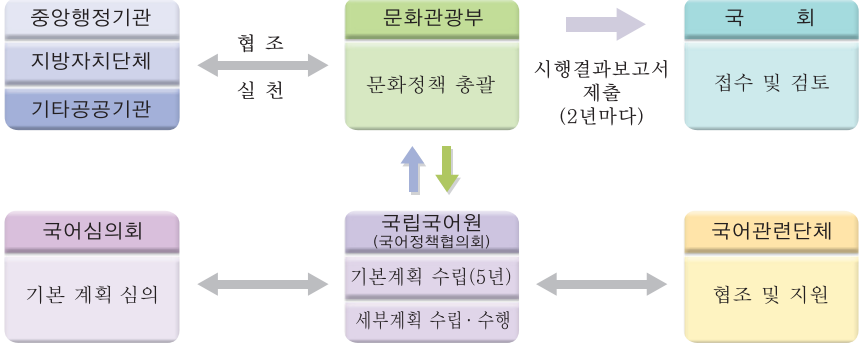

# Ⅱ. 국어 환경의 분석과 진단

# Ⅱ. 국어 환경의 분석과 진단

## 01 국어 환경의 분석

### 국내 환경의 변화

- 2000년대 들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외래어 · 외국어의 오남용, 대중매체 · 인터넷 통신언어의 비규범적 언어 사용 등 사회적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국어 사용 환경의 악화 요인 점증
- 영어 조기교육과 청소년의 해외 조기유학 풍조 등으로 국어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적 국어 사용 능력이 점차 저하되는 등 국어의 존립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지식정보문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 우려
-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에 따른 대상별 수요자 중심의 국어교육 시책 등 다원주의 언어정책 요구

### 국외 환경의 변화

- 국제화 · 정보화가 확산되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말과 글이 이질적 문화권역 간의 문화교류와 정보소통의 핵심 요소로 등장
- 21세기 문화자본의 시대에 '문화 강국'은 곧 '경제 강국'인바 서구 선진 각국은 국가 발전 전략으로 문화의 바탕인 자국의 언어를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언어문화 권역의 확장을 꾀하고 이를 통해 시장 확대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추구
- 한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전통문화와 인간 중시의 가치철학이 용해된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어 문화권역 확장의 최대 호기
-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우경화 등 주변국의 국가 팽창전략에 대응하여 언어문화 권역 확장을 위한 거시적 · 세계주의 지향의 국가 언어정책으로 전환 필요

## 02 부문별 진단

### 국어 사용 환경 부문

- 산업화의 가속에 따른 탈지방화 · 국제화, 언어 사용 계층의 다양화와 분화 등 사회 현상의 급격한 시대적 변화 및 언어 사용 현실을 반영하는 다원주의 언어규범과 국어 정책 수립 필요

  ☞ ① 표준어규정 위헌 소송 제기(2006. 5월, 탯말 두레 정재환 외 122명),
  성(姓)씨 두음법칙 불인정 판결(2006. 6월, 대전지법)

  ②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결과 국어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국어교육 강화와 국가의 언어정책 활성화를 요구
  (2005. 10월, 전국 4,055명 대상 설문조사, 국립국어원)

- 정부를 비롯하여 각급 공공기관의 정책용어 등에 외래어 · 외국어 · 한자어 사용이 지나치게 많아 공공언어 순화 시급

  ☞ 외래어 · 외국어에 대한 국민 인지율이 평균 18.5%로 정책의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공정책의 신뢰도 저하 요인(2006. 4월, 전국 508명 대상 전화 설문조사, 국립국어원)

- 신문 · 방송 등 대중매체의 비규범적 · 비교육적 언어의 사용으로 언론의 사회적 · 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자율순화 기능 강화 필요

  ☞ 신문 · 방송언어 실태조사 결과(2005. 10월, 국립국어원)

- 청소년층에 의한 인터넷 통신상의 줄임말, 비속어, 외계어 등의 범람으로 우리말 체계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국어 순화 교육 강화 필요

  ☞ 통신언어 실태조사 결과(2000년, 2001년, 문화관광부)

### 국민의 국어 능력 부문

- 최근 들어 '국민의 국어 능력 수준'에 대한 각종 조사 결과, 국어 능력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국어 능력 : 표현력〈쓰기, 말하기〉+이해력〈읽기, 듣기〉+규범력〈표기법 등〉

- 특히,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모두 보고서 · 기안문 등의 문서 작성 능력, 발표와 토론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 시급

☞ 국어능력검정시험 수요 최근 급증(KBS,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주관 시험 응시자 수 : '01년~'06년 누계 95,651명 중 '05년 22,193명 → '06년 37,898명)

- 또한,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시작한 "국어능력검정시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업체와 언론기관의 신규채용 시 가점 부여 등 검정시험결과 활용의 저변 확대 필요

## 한국어 해외 보급 부문

- '한류'의 영향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전략 부재

☞ ① 북경 한국문화원 한국어강좌 수강자('94년 700여 명 → '05년 5,000여 명)
② 베트남 지역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03년 238명 → '05년 658명)
③ 몽골 지역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05년 720명 → '06년 10,000여 명)
④ 일본 내 한국어강좌 개설 대학('96년 140여 개 → '05년 350여 개 대학)

- 외국인의 학습 수요층 변화(외교관 · 학자 · 유학생 중심 → 일반 대중)와 저변 확대로 인하여 체계적인 한국어 보급정책 등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종합적인 '한국어 세계화 전략' 마련 시급

☞ 문화상호주의 : '한국문화'와 '현지문화'를 접목한 지역 특화형 한국어 교육

## 국어 정보화 부문

- '21세기 세종계획(1998~2007년)' 추진 사업결과물의 연구부문 간 통합관리를 위한 '한국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진화에 따른 지식정보문화시대의 가속화에 부응하여 국민의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종계획'의 후속 사업계획 수립 등 국어정보화사업 지속 추진 필요

## 국어정책 추진 기반 부문

- 국어기본법(2005. 7월 시행)에 명시된 각종 제도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제도 운영과 정책 시행의 실효성 확보 미흡
  - ☞ (예시) '국어책임관'의 지정(법 제10조), '국어상담소'의 지정(법 제21조)
- 문화관광부로부터 국어정책 기능이 이관(2005. 1월)되고 국어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관의 업무영역이 대폭 확장되고 다원화되었으나 조직체계의 미비와 재정 부족 및 인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 ① 국립국어원 기능 전환 : '정책개발과 연구 활동' → '정책수립과 정책집행'
  - ② 인력 수급 현황 : '04년(39명) → '05년(41명) → '06년(44명)
  - ③ 예산 확보 현황 : '05년(79억 원)→ '06년(86억 원)→ '07년(89억 원)

- 그간 연구기관으로서의 조사연구와 규범 적용 등 단순·반복적 업무 수행에 따른 타성화로 정책수립과 시책개발 및 정책집행 관리업무 역량이 미흡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개방 확대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 조직 혁신 방안 필요

# Ⅲ.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 Ⅲ.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 01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

- 「국어기본법」의  기본 이념 구현과 실효성 제고
- 사회 통합적 언어복지 시책 확대 시행
- 국제화 · 다문화 사회를 포용하는 다원주의 언어규범 정립
- 국어 사용 환경의 점진적 개선과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 지식정보문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어정보화 사업의 지속 추진
-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 국어문화유산 발굴과 지역어 · 토착어 조사 사업 확대

## 02 추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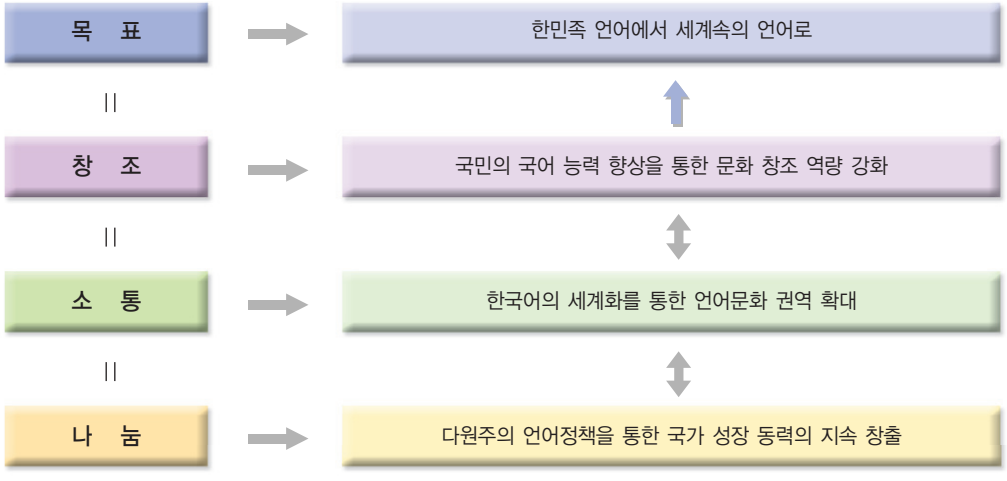

# Ⅳ. 3대 중점 추진 과제

# Ⅳ. 3대 중점 추진 과제

## 주요 내용

| | |
|---|---|
|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연수 체계 정비 |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를 '국어 전문교육기관' 화<br>▶ 맞춤형 국어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br>▶ 국내외 한국어 교원 재교육 및 연수 강화<br>▶ 교육대상별 · 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 보급<br>▶ 온라인 국어 교양강좌 개설, 운영 |
| 2.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 ▶ 현지 밀착형 '한국어 문화학교' 단계별 설치, 운영<br>• 1단계 1차('07~'08) :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36개교<br>• 1단계 2차('09~'11) :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64개교<br>• 2단계 ('12~'16) : 동남아, 서남아 지역 100개교<br>▶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망 구축<br>• 한국어 교육기관과 교육전문가 연결망 구축<br>• 권역별 · 지역별 '한국어문화교류협의회' 결성<br>• 아시아지역 언어정책기관 국제학술회의 정례화<br>• 정보교류를 위한 인터넷 공동체(커뮤니티) 구축<br>▶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 체제 정비 및 운영 활성화<br>▶ 현지 특화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지원<br>• 언어권별, 교육단계별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br>• 현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개발<br>▶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전문가 육성<br>• 원내 국어 전문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재교육 실시<br>• 현지 한국어 교육전문가 초청 중 · 단기 연수 실시<br>• 국내 한국어 교육전문가 파견 현지 연수 지원<br>▶ 민간기업의 협력 유도, 민관 간 상승 전략 추진<br>▶ 온라인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방송체계 구축 |
| 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 ▶ 한국어 학습지원을 위한 다국어 웹사전 편찬<br>▶ 언어권별 대역사전 원고 작성 및 웹사전 시스템 개발<br>▶ 실용 예문 구축 및 사전 연계 음성 녹음 제공<br>▶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0개 언어로 순차 편찬<br>▶ 사전편찬실 설치, 상설 운영 |

# 0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연수 체계 정비

[ 주요내용 ]

-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를 '국어 전문교육기관'화
- ▶ 맞춤형 국어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 국내외 한국어 교원 재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강화
- ▶ 교육대상별 · 교육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 및 보급
- ▶ 온라인 국어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설, 운영

## 현황과 문제점

• 국민의 국어 능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 고조
- 사회적으로 영어 등 외국어 능력 배양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어 능력 계발에 무관심
- 국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 약화가 인터넷에서 언어 파괴 등으로 나타남
- 영상 시대를 맞아 독서량 퇴조 및 국어 사용 능력의 약화
- 이로 인한 계층 간 · 세대 간 의사 전달 및 소통의 어려움이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잠재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최근 글쓰기, 토론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일반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국어 교육 시급

• 사회 적응형 국어교육이 필요한 새로운 교육 대상의 증가
-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새로운 교육 대상이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은 매우 미흡한 상태

•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증대
- 공무원, 언론인, 출판인, 교과서 제작자, 방송인, 영화인 등 공공부문의 직무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국어 재교육의 수요 증가
- 국어책임관 및 국어상담소 상담요원 등의 역량 강화 교육 시급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의 교육 수요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시설과 운영인력 부족으로 일부만 수용

**연도별 국어문화학교 교육 횟수 및 수강자 수**

| 구 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
| 교육 횟수 | 19회 | 18회 | 16회 | 17회 | 17회 | 18회 |
| 수강자 수 | 1,292명 | 1,452명 | 1,486명 | 1,458명 | 1,765명 | 1,944명 |

• 국내외 한국어 교원 재교육 미흡 및 연수 프로그램 미비
– 국내 초 · 중 · 고교 교사의 국어연수 수요 대처 미흡
– 국외의 한국어 학습 열풍 등 한국어 교육수요의 양적 · 질적 변화에 따라 한국어 교원의 공급과 재교육 등이 시급하나 이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미비
• 국어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총괄적인 교육연수 체계 미비
– 현재의 국어문화학교 여건(연구관 1명, 기능직 1명)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국어교육 수요 충족 곤란
–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계층별 · 수요자별 맞춤 교육과 한국어 교원의 재교육 및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교육운영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과 인력 확보 시급
–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정책개발 전문가와 한국어 교육전문가 양성체제 미비

## 추진 내용

•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 전문교육기관'화
– 현 '국어진흥부'를 '국어진흥교육부'(가칭)로 개편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교육 전담팀 신설
– 교육시설 확충과 함께 교수요원 및 교육운영 인력 연차별 확보
– 향후 '국어 전문교육기관'을 개편, '언어정책대학원' 설립 추진
• 맞춤형 국어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국민 대상 단계별 '국어 소통능력심화과정' 개설(초급, 고급)

〈예〉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대상 교육

– 공공부문 종사자 전문교육과정 확대 운영(공무원, 국어책임관, 국어 상담요원, 방송인, 출판인, 연예인, 교과서 제작자 등)

〈예〉 일반직 공무원 대상의 '공문서 바로 쓰기 및 화법' 교육
국어책임관 대상의 '주요 정책용어 개발' 교육
법제업무 공무원 대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교육 등

• 국내외 한국어 교원 재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강화
– 각급 학교 교사의 국어연수 확대 실시
– 한국어 교원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재교육 프로그램 상설화
– 한글학교 운영자 등 현지 한국어 교육전문가 초청 연수 확대
• 교육대상별 · 교육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 및 보급
• 온라인 국어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설, 운영
– 교육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교육 희망자를 위한 온라인 강좌 개설
– 온라인 강좌를 위한 동영상 제작 및 교육운영 시스템 개발
– 외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강의 교재 개발 및 공동 운영

##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 추진 일정 | 추진내용 | 소요 예산 (백만원) |
|---|---|---|
| 1단계<br>('07 ~ '08년) | • '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 및 인준<br>• 맞춤형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범 운영<br>• 한국어 교원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br>• 교육대상별 · 교육과정별 교재 개발<br>• 온라인 국어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 | 800 |
| 2단계<br>('09 ~ '11년) | •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운영<br>•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재교육 과정 운영<br>• 온라인 국어 교양강좌 실시<br>• '언어정책대학원' 설립 계획 수립 및 추진 | 5,190 |

# 02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 주요내용 ]

- 현지 밀착형 '한국어 문화학교'(세종학당)의 단계별 설립 및 운영
-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 교원의 양성, 재교육, 초청 연수 등 체계적 육성
- 온라인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방송 체계 구축

## 현황과 문제점

• 동북아 지역의 한국어 학습 수요와 보급 시설 현황

[ 한국어능력시험 현지 응시자 수 연도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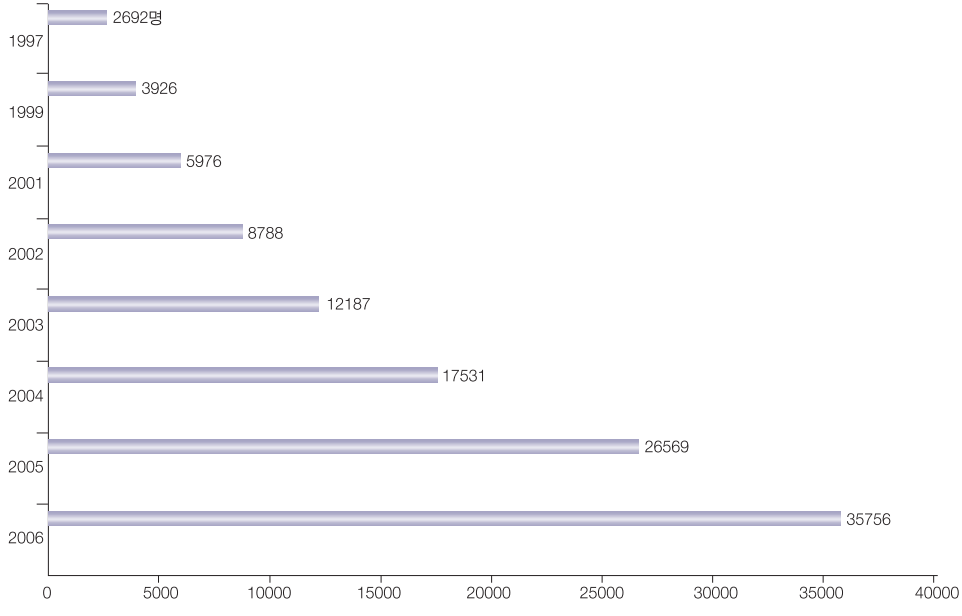


※ 응시자 수 단위 : 명

[ 한국어 학습 수요와 개설 강좌 수 현황 ]

| 구분 \ 지역별 | 중국(동북3성) | 중앙아시아 | 몽 골 |
|---|---|---|---|
| 한국어 가능자(명) | 2,450,000 | 330,000 | 10,000 |
| 한국어 수요자 예측(명) | 1,500,000 | 550,000 | 150,000 |
| 현지 대학의 한국어학과 | 45(5) | 7 | 18 |
| 현지 개설 강좌 | 2 | 3 | 0 |

〈주〉 ※ 한국어 가능자는 현지 국적 동포 포함
※ 수요자 예측은 '현지인 취업 가능 인구 × 한국 기업 참여율'로 계산한 수치임
※ 현지 개설 강좌는 해외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교육부 소속)의 공인된 한국어 강좌를 말함

• 한국과 주요 국가의 자국어 보급 실태 비교

[ 자국어 보급 시설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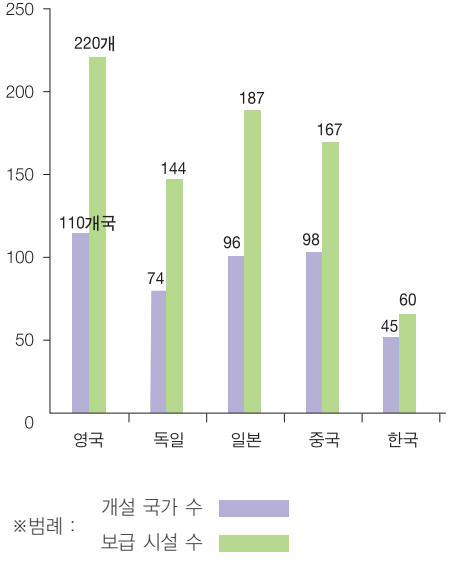


[ 자국어 보급 투자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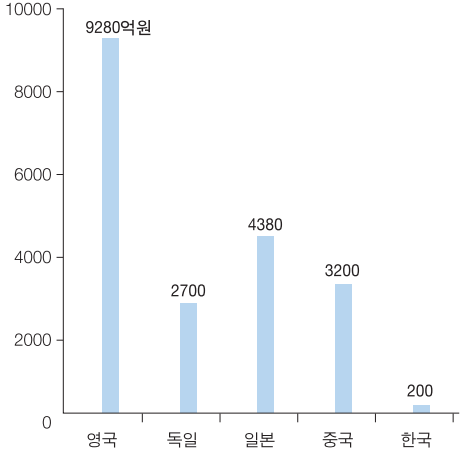


※ 투자비 단위 : 억 원

※ 각국의 보급 시설 : 영국(브리티시 카운슬), 독일(괴테 인스티투트), 일본(일본문화원), 중국(중국문화원)

[ 정부 부처별 한국어 보급 사업 현황 ]

| 보급현황 / 부처별 | 예산액 | 특 성 | 보급 기관 |
|---|---|---|---|
| 문화관광부<br>(국립국어원) | 16억 4천만 원<br>(6억 3천만 원) | 현지 일반인 대상<br>한국어 보급을 통한<br>한류(한국문화) 확산 | 국립국어원<br>재외 한국문화원<br>한국어세계화재단 |
| 교육인적자원부 | 37억 4천만 원 | 재외 국민 대상<br>한국어 교육 치중 | 국제교육진흥원<br>한국교육과정평가원<br>한국교육원 |
| 외교통상부 | 145억 8천만 원 | 재외 동포 대상<br>한국어 교육 치중 | 재외동포재단<br>한국국제교류재단<br>한국국제협력단 |

• 문제점

– 2006년도 국외 한국어 보급 예산 약 200억 원의 대부분은 현지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과 재외 국민 및 재외 동포의 한국어 교육 지원에 집중

– 한국어 보급 핵심 기관인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의 보급 예산(16억 4천만 원)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급 사업 시행 곤란

– 현지 대학에 개설된 정규 교과과정의 한국어 강좌로는 현지 일반 대중의 한국어 학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사설 강습소가 범람하는 등 '한국어의 대중화 보급에 한계점' 노출

– 한류 확산 지역의 "반한류, 항한류"를 예방하기 위한, 한국어를 매개로 하는 한국문화의 체계적 보급 시설(재외 한국문화원 등) 부족

–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 체계의 정비와 부처별 특성화 · 내실화 시급

## 현안 과제

-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한국문화의 해외 확산 등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조직과 인력 및 예산 확충 필요
- 한국어 교육 수요 증대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으나 추진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사후 관리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대책 필요
- 양질의 교재, 우수 교원,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시설을 제공하여 한국어 보급의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어 보급에 관한 종합적 관리체제 구축 긴요

## 추진 방향

- 1단계로 먼저 한국어 학습 수요가 많은 동북아지역을 거점 기반으로 보급체계를 구축한 후, 2단계로 동남아시아 · 서남아시아지역, 3단계로 유럽과 미주지역으로 확대
- 한국어 강좌가 설치된 현지 대학과 정규 학원의 시설을 활용
  「한국어 문화학교」를 단계별 · 연차별로 설치, 운영
-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공급
- 인터넷, 국제방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
- 재외 한국문화원과 현지 교육기관을 통하여 관리 및 지원

## 추진 내용

- 현지 밀착형 '한국어 문화학교'(세종학당) 단계별 설립 및 운영

**[ 세종학당 단계별 · 연차별 개설 계획 ]**

◆ 제1단계(2007년~2011년) : 동북아 및 중앙아시아 권역 100개교

| 지역 \ 연도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계 |
|---|---|---|---|---|---|---|
| 몽골 지역 | 5개교 | 5개교 | 5개교 | 5개교 | 5개교 | 25개교 |
| 중국 지역 | 10개교 | 10개교 | 10개교 | 15개교 | 15개교 | 60개교 |
| 중앙아시아 지역 | 3개교 | 3개교 | 3개교 | 3개교 | 3개교 | 15개교 |

◆ 제2단계(2012년~2016년) : 동남아 및 서남아시아 권역 100개교

| 연도별 / 지역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계 |
|---|---|---|---|---|---|---|
| 동남아지역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 10개교 | 10개교 | 10개교 | 10개교 | 10개교 | 50개교 |
| 서남아지역 (인도, 파키스탄, 네팔) | 10개교 | 10개교 | 10개교 | 10개교 | 10개교 | 50개교 |

-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 국외 한국어 교육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
  - 국외 한국어 교육전문가 인적 연결망 구축
  - 권역별 · 지역별 '한국어문화교류협의회' 결성
  - 아시아지역 국가 언어정책기관 국제학술회의 정례화
  - 한국어 교육기관 책임자 초청 연찬회(워크숍) 등 개최
  -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인터넷 공동체(커뮤니티) 구축
-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 체제 정비 및 운영 활성화
  - 정책 조정기능 강화, 부처별 · 기관별 보급 사업의 특성화
  - 보급 사업의 정기적 평가 및 중장기적 전략 개발, 제시 등
-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공급
  - 언어권별, 교육 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지역별 문화적 특성에 맞는 다매체 교육 내용 개발
  - 한국문화와 연계한 현지 신화 · 민담 · 전설을 발굴, 교재로 활용
-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 원내 국어 전문교육과정과 연계한 한국어 교원 양성 및 한국어 교사 재교육 실시
  - 국외 파견 예정 한국어 교원에 대한 연수과정 운영
  - 현지 한국어 교육 전문가 초청 중 · 단기 연수
  - 국내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 파견, 현지 한국어 교원 연수 강화
  - '한국어문화봉사단' 결성 및 파견, 현지 한국어 교육 지원
- 민간기업의 협력 유도, 민관 간 상승 전략 추진
- '온라인 한국어 · 한국문화 교육방송 체계' 구축

- 한국어와 한국문화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수준별 · 단계별 온라인 한국어강좌 개설 및 운영
- 인터넷 한국어 방송체제 구축
- 국제방송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방송 확대 실시

## 전망과 기대 효과

• 동북아지역 문화연대를 통한 한국 문화산업 시장의 확대
  - 게임 · 음반 · 영화산업에서 경제적 이익 창출
• 동북아 지역 노동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문화 충격 극소화
  - 제2차 산업 노동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구사 원활화로 사회 적응 촉진 및 사회경제적 이익 발생
• 동북아 등 아시아지역 한류의 지속 확산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의 안정적 확보

## 추진 일정과 소요 예산

| 추진일정 | 추 진 내 용 | 소요 예산 (백만원) |
|---|---|---|
| 1단계 1차<br>('07 ~ '08년) | •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1차 36개소)<br>• 현지 특화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br>•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운영 및 재교육 실시<br>• 한국어 교육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br>• 한국어 교육전문가 인적 연결망 구축<br>• 한국어문화교류협의회 결성(몽골, 중국 등)<br>• 인터넷, 온라인 한국어 교양강좌 시험 방송 | 6,425 |
| 1단계 2차<br>('09 ~ '11년) | •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2차 64개소)<br>• 현지 특화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계속)<br>• 한국어 교원 양성, 재교육, 초청연수(계속)<br>• 인터넷, 온라인 한국어 교양강좌 본격 방송 | 20,775 |
| 2단계<br>('12 ~ '16년) | •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100개소)<br>→ 동남아, 서남아시아 지역<br>• 현지 특화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계속)<br>• 한국어 교원 양성, 재교육, 초청연수(계속)<br>• 인터넷, 온라인 한국어 교양강좌 방송(계속) | 50,000<br>(추후 반영) |

# 0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 주요내용 ]

- ▶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지원을 위한 다국어 웹사전 개발
- ▶ 언어권별 대역사전 원고 작성 및 웹사전 시스템 개발
- ▶ 실용 예문 구축 및 사전 연계 음성 녹음 제공
- ▶ 1차 몽골어 등 5개 언어, 2차 중국어 등 5개 언어 편찬
- ▶ '사전편찬실' 설치, 상설 운영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어 학습 사전의 부족
- 해외에서의 한국어 학습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언어권별 학습 사전의 수요 급증
- 제작 비용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언어권별 학습 사전은 아예 없거나 내용이 매우 부실한 실정

• 국내 사전 시장의 축소
- 온라인 사전의 활성화, 휴대용 전자사전의 보급 등으로 인해 종이사전 시장 규모가 매년 축소되면서 사전 편찬의 규모와 범위가 축소되고 있음
- 현재 사전 시장은 수요가 많은 '영한사전', '일한사전', '중한사전'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타 언어사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매우 미흡

• 영어 외 기타 언어에 대한 정보 수요 증가
- 국력 신장과 함께 우리 기업, 개인 등이 진출하는 국가가 늘고 있어 영어 외의 다른 언어에 대한 정보 수요 증가
- 국내 학계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연구자 위주여서 기타 언어에 대한 자료 축적이 빈약한 실정

## 추진 방향

-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에 초점을 두되 한국인이 현지어를 익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작
- 긴급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 다국어 웹사전을 임시 개통하고 단계적 개발을 통해 서비스 제공 범위 확장
- 한국어 학습 수요 등을 감안, 10개 언어자료 개발
  - 1차 개발 대상(한국어 학습 수요가 많은 언어 5개) : 베트남어, 타이어, 몽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 2차 개발 대상(사용 인구가 많은 언어 5개)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 추진 내용

- 언어권별 대역사전 원고 작성
  - 언어권별로 대역사전 원고를 작성할 현지 사업자 선정
  - 이미 개발된 한국어 학습사전을 토대로 50,000 단어로 확장
  - 한국어 사전 원고를 각 언어에 맞춰 기본 어휘부터 번역(한-몽, 몽-한, 한-중, 중-한 등)
  - 사전 전문가, 해당 분야 전공자의 정밀 감수를 거쳐 단계적으로 웹 서비스
- 다국어 지원 웹사전 시스템 개발
  - 사전 모형에 따라 사전 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 설계
  - 음성 제공과 다국어 글자체를 지원하는 환경 구현
- 사전 실용 예문 구축
  - 언어 간 접촉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큰 문장 중심으로 10만 예문을 작성하여 언어별로 번역
  - 한국어 학습자 오류 말뭉치를 확보하여 오류가 높은 문장을 예문에 포함하고 사전 내용과 예문을 연계, 검색 기능 제공
- 사전 연계 음성 녹음 서비스
  - 한국인 화자를 위한 외국어 발음 설명서 작성
  - 외국인 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설명서 작성
  - 녹음 대상 단어 및 예문 선정 후 녹음 작업
- 웹사전 결과물을 책자나 시디로 제작, 보급

– 사전 개발이 완료된 후, 시디나 책자를 만들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곳에 배포
– 사업 개발 결과물을 활용하여 2차로 책을 만들고자 하는 출판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민간 출판 활성화 유도

• '사전편찬실' 설치, 상설 운영
– 표준국어대사전의 웹사전과 연계하여 전체 사업 총괄 진행
– 사전 편찬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 상설 조직으로 운영

## 기대 효과

•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자료 제공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지원 및 학습 열기 지속에 기여
• 양질의 사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의 효율성 제고
• 국외 언어 전문가와 공동 협력함으로써 언어 간 협력관계 구축
• 실용 예문과 녹음 음성을 다수 제공함으로써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언어 교류 활성화 기여
• 사업 결과물을 민간 출판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학습교재의 출판 활성화에 기여

##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 추진일정 | 추진내용 | 소요 예산 (백만원) |
|---|---|---|
| 1단계<br>('07 ~ '08년) | • 다국어 사전(1차 : 5개 언어) 국어원고 작성<br>• 다국어 지원 웹사전 시스템 개발<br>• 사전 실용 예문 구축<br>• 사전 연계 음성 녹음 착수<br>• 웹사전 시스템 개발 및 시험서비스 개시 | 500 |
| 2단계<br>('09 ~ '11년) | • 사전편찬실 설치 운영, 2차 5개 언어 착수<br>• 다국어 사전(1차 : 5개 언어) 개발 완료<br>• 실용 예문 구축 및 번역 완료<br>• 웹사전 시스템 개발 완료 및 1차 녹음 완료 | 6,500 |

# Ⅴ. 10대 추진 과제

# Ⅴ. 10대 추진 과제

| 연 번 | 추 진 과 제 | 세 부 과 제 |
|---|---|---|
| 1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 1-1 국어발전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br>1-2 국어정책 추진 관련 지원체제 운영 활성화<br>1-3 언어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체제 강화<br>1-4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 |
| 2 | 남북 언어교류 확대 및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 2-1 남북 언어교류 활성화<br>2-2 언어정책 및 정보교류 국제협력망 구축 |
| 3 |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 | 3-1 국제결혼 이주 여성 등의 한국어 교육 확대<br>3-2 새터민 정착을 위한 국어교육 지원<br>3-3 수화, 점자 체계 개선 지원 |
| 4 |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 4-1 국어순화 사업의 강화<br>4-2 대중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br>4-3 신문 · 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 개선<br>4-4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br>4-5 공문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표현 개선<br>4-6 교과서, 법령문 등의 감수제도 정착 |
| 5 |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 | 5-1 국어능력 검정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br>5-2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 활용<br>5-3 '국어상담소'의 지역별 문화 거점화 |
| 6 |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 6-1 국어 사용 실태조사<br>6-2 민족 생활어 및 직업 생활어 조사<br>6-3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
| 7 |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 7-1 민족문화 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 보완<br>7-2 신어조사 지속 실시<br>7-3 다양한 맞춤형 사전 편찬 |
| 8 | 국어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 8-1 국어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br>8-2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br>8-3 국어 능력 향상 학습시스템 개발<br>8-4 한국어의 다양성 체험관 설립<br>8-5 국어전문도서관 구축 |
| 9 |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 9-1 훈민정음 번역 등 한글 문화유산 보급<br>9-2 우리말 역사자료의 수집과 정리<br>9-3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br>9-4 도시 언어경관 정비 및 조성<br>9-5 한글의 산업화 지원 |
| 10 |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10-1 국어 정보지 발간 및 보급 확대<br>10-2 국어정책 홍보 맞춤 서비스체제 구축<br>10-3 국어생활 기획총서 발간<br>10-4 국어운동단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br>10-5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

# 01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 추진목적 ]

- 공공기관을 통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실천과 실효성 제고
- 관련 법과 제도 정비로 국어정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 언어 사용 현실을 반영한 어문규범의 현실화와 합리성 확보
- 언어 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 강화 및 언어자원 표준화를 통한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 유도

## 1-1 국어발전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

### 현황과 문제점

- 2003. 1. '국어발전종합계획' 발표(문화관광부)
- 2005. 1. 27. 국어기본법 공포(법률 제7368호)
- 2005. 7. 28.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대통령령 제18973호)
-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각종 제도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제도 운영의 정착화와 시책 수립에 애로
- 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의사항을 의무 규정화 하는 등 미비점 보완 필요

※ 보완 사항(안) : 국어심의회 운영의 활성화,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운영, 국어상담소의 지정과 운영, 언론기관의 공적기능 강화, 한국어 교원자격 제도 운영 등

※ 추가 사항(안) : 국어발전기금 조성, 국립국어원의 역할 명시, 국어책임관 운영결과 평가 제도, 언어정책대학원 설립, 도시 언어경관 조성과 한글의 산업화 지원 등

### 추진 내용

- '국어발전기본계획' 의 후속 조치(법 제7조)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국회 보고(2년마다)
  - 공공기관에 통보,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 협조
    - 대상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 근거 : 법 제3조 제4호, 제4, 7, 10, 22조 및 시행령 제3조
    - 내용 : 자체 추진실적과 평가결과 보고(매년)
- 현행 국어기본법의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 법 개정안 작성 소위원회 구성
  - 보완 사항이나 추가 사항에 대한 각계 의견 청취
  - 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서울 및 지방 주요 도시)
  - 관계 부처 의견 조회 및 국회, 주요 정당에 개정안 설명

## 1-2 국어 정책 추진 관련 지원체제 운영 활성화

### 현황과 문제점

- 심의기구 및 협의 기구 현황
  - 국어심의회(법정 기구/법 제13조, 시행령 제5조~제10조)
  -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법정 기구/법 제22조)
  -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법정 기구/시행령 제12조)
  - 표준어사정협의회(임의 기구)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임의 기구)
- 국어심의회의 실무적 사안들을 검토하고 처리할 하부 기구가 없어 심의회 운영의 활성화 미흡 및 심의 기능의 효율성 저조
- 부처 간 협의 기구인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06. 5월 구성),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의 미비로 제도 운영의 정착화 미흡
- 임의 기구인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등의 심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심의 결과의 실효성 확보 미흡
- 정책 형성 과정에 언어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 집행 결과를 감시할 환류 체계 미비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 미흡

### 추진 내용

- 국어심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심의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세칙' 제정, 시행
  - 사무국 설치와 심의회 운영 관련 예산 지원
  - 분과별 '실무소위원회'와 '합동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 국어정책과 어문규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필요시 관련 소위원회 구성과 전문가로부터 의견 청취 등
-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등 법정 협의기구의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 정착화 도모
- 표준어와 외래어의 심의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고 내용은 법정기구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 결정
- 국어 정책에 대한 상시 평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국어정책시민평가단'(가칭) 구성, 운영

## 1-3 언어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체제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어문 규범 영향 평가'를 위한 예비 조사 실시('05년)
- '88년 어문규범 고시 이후, 시대 변화에 따른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개념 및 개별 어휘의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외래어 표기 용례의 대폭적인 보강 필요성 제기
- 재정비된 어문규범을 보급할 체제 강화 필요

### 추진 내용

- '어문규범 영향평가' 실시와 어문규정 개정안 마련, 국어심의회 상정 · 심의(법 제11조, 제12조)
  - 맞춤법, 표준어 개념과 개별 어휘의 의미, 신조어와 지역어
  - 외래어 표기법과 발음법, 고유어 · 한자어 발음 실태 등
- 개정된 어문 규범의 효과적인 보급 대책 수립, 시행
  - 심의 결과를 용례집 등으로 발간하거나 사전 편찬, 보급

## 1-4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

### 현황과 필요성

- 언어자원의 표준 형식 제정 참여(국제표준화기구, 기술표준원)
  - 문자코드 표준화 작업 참여, 현대 한글 및 옛 한글의 글자 목록 정비('92년 이후)
  - 한자 표준화 작업 참여, 한자코드 표준화와 자형 및 표준음 조사('95년 이후)
  - 전문용어 기술형식 표준화 작업('04년 이후)
- 언어자원의 활용성 증대를 통해 국민의 언어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자원의 유통체계를 표준화하는 국제표준화 사업에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 제공 지속 필요

### 추진 내용

- 옛 한글, 이두, 구결, 한자 등의 자모 목록 정비 및 표준화 작업
- 전문용어 및 기타 언어자원 기술 형식의 국제표준화 작업 참여
  - 실생활에서 언어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적인 기술 형식, 유통체계 마련
  - 국어생활의 일부를 이루는 한자의 표준음, 표준자형 등의 정비 및 제정

# 02 남북 언어 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 추진목적 ]

- 남북 언어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언어 동질성 회복과 남북 언어통합 기반 조성
- 전 세계의 언어정책 동향과 연구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시의 적절한 국가 언어정책 및 국어 진흥 시책 개발
- 언어정책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국제 연대 도모

.

## 2-1 남북 언어 교류 활성화

### 현황과 필요성

- 남북 학술회의 개최( '96년 1회, '01년 이후 5회 개최)
- 말뭉치, 지역어(방언) 자료, 기초 어휘자료, 사전 입력 자료 등 북한자료 구입( '02년 이후)
- 남북 언어 공동조사 추진( '04년부터 남북 방언조사 사업)
- 남과 북이 공동사업 추진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 미비
- 남북 언어통합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 부족으로 남북 언어 공동 조사 사업 지속 추진 필요

### 추진 내용

- 남북 학술회의 개최(연 1~2회)
  - 주제 : 학술용어 및 전문용어 등 남북 언어 통합 방안 등
- '한민족 언어공동협의회' 구성, 운영
  - 구성 : 남, 북 학자 10명 내외(재중 동포 언어학자 포함)
  - 운영 : 연 2회 이상 상호 방문, 현안 협의
- 남북 공동사업 추진
  - 남북 언어 자료집 발간(말뭉치, 방언, 지명 등 공동조사 사업 및 연구 결과)
  - 체육, 의학 분야 등의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 통일(표준)화 사업

– 남북 언어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사전 편찬
– 기타 남북의 '한글 고전적 및 문헌자료' 전시회 개최 등

## 2-2 언어정책 및 정보 교류 국제 협력망 구축

### 현황과 문제점

•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와 업무협정 체결('04년)
– 매년 직원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 전 세계 언어정책기관 간 교류협력체제 미비
– 각국의 자국어 진흥 및 보급정책, 국제 언어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우리 국어정책에 반영 필요
–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동 사업 추진과 국제 연대 도모 필요

### 추진 내용

• 세계 각국의 언어정책기관 현황 조사, 안내 자료집 발간
• 각국의 언어정책기관과 상시적으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 1단계 : 아시아 지역 언어정책기관과의 교류협력체제 구축
– 2단계 : 전 세계로 확대, 지역별 교류 협력 체제 구축
• 국제 교류 협력망을 활용한 공동 사업 개발, 추진
– 연구원의 상호 초청 및 파견, 공동 연구 수행
– 국제학술회의 연례 개최
– 남북 언어교류 및 통합, 한국어 국외 보급, 각종 용어 정비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

# 03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

[ 추진목적 ]

- 국제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 이주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한국 사회 정착 지원 및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
- 타 언어문화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포용정책으로 다원화되는 사회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
- 수화, 점자 등의 정비를 통한 언어 소외계층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3-1 국제결혼 이주 여성 등의 한국어 교육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국제결혼 이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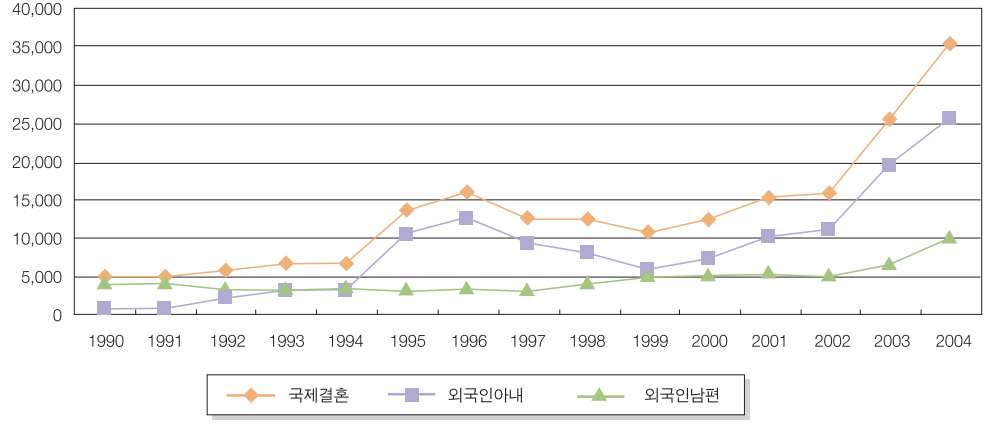


• 국내 취업 외국인 노동자 현황(법무부 통계)

– '06. 6. 30. 현재 394,511명 : 합법 체류자 205,291명(52%),
불법 체류자 189,220명(48%)

- 외국인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지원 현황
  -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실 운영('05년부터, 한국어세계화재단)
  - 국제결혼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기관 지원 대상 선정('06년)
  - 국제결혼 이주 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교재 개발('06년)
  -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용 방송프로그램 개발, 방영(EBS, '06년)
- 이주민 한국어 교육을 위한 지역별 거점 교육 지원 체계 미비
- 관련 교재 개발과 보급, 강사 지원 등 직접 지원 미흡

### 추진 내용

- 한국어 교육 지원체계 강화
  - 법무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 체제 구축
  - 국어상담소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이주민 교육 확대 실시(국고보조금 교부)
  - 국어상담소 · 지방대학과 연계, '한국어 교육 연결망' 구축
  - 한국어 교육전문가 파견, 한국어 강사 및 자원 봉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실시
-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교육 지역 연차적 확대

## 3-2 새터민 정착을 위한 국어교육 지원

### 현황과 문제점

- 새터민 이주 현황
  - '05. 12월 말 현재, 7,687명
- 기존의 단선적인 국어교육에서 실제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 적응 교육으로 전환 필요
- 새터민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는 체계적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미비

### 추진 내용

- 새터민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통일부)
  - 새터민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교육용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 3-3 수화, 점자 체계 개선 · 지원

### 현황과 문제점

- 수화, 점자 등 특수언어 지원 사업 현황
  - 한국 점자규정 제정( '97년)과 개정( '05년)
  - 어문도서 점역( '97~ '05년, 우리 문장 강의 등 7종)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전자국어사전 개발( '03~ '04년)
  - 점자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점자 연수( '98~ '03년)
  - 한국어 수화 사전 및 일본어, 스페인어 수화 사전 발간( '05년)
- 수화, 점자의 전문가 부족으로 신진 연구 인력의 참여 유도 및 전문인 양성책 필요
- 수화, 점자 등 특수언어 사용 계층에 대한 지원 시책 미비

### 추진 내용

- 점자 · 수화 사용실태 정기적 조사, 지원 방안 마련
- 수화 전문용어 개발(법률, 정보통신, 종교, 스포츠 용어 등)
- 수화 화법 연구, 점자 · 수화의 보급과 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 지원
- 한국 점자규정의 보완
- 남북 점자 · 수화 공동 연구
- 점자 관련 자료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 04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 추진목적 ]

- 외래어 · 외국어 남용현상 개선 등 지속적인 국어순화 및 정비 사업을 통해 우리말을 중시하는 국어의식 고양과 우리말의 가치 재발견으로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확립
- 신문 · 방송 · 인터넷 등 대중매체 언어의 질적 향상을 통해 바르고 아름다운 국어의 보전과 국어문화의 발전을 선도
- 대중매체의 언어 중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여 언어의 공공성 제고와 국민 통합에 기여
- 사회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 보급
- 법령문, 공문서 등의 언어표현 관행을 개선하여 정부와 국민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 도모
- 교과서, 법령문 등의 감수 협력체제 확립을 통한 공공언어의 수준 향상

## 4-1 국어순화 사업의 강화

### 현황과 필요성

- '91년~ '03년까지 매년, 특정 전문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서 널리 쓰는 외래어, 일본어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40개 전문 분야의 21,000여 용어 순화)
- '04년~현재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매주 외래어 하나씩을 선정하여 적절한 우리말로 순화(총 100여 단어 순화)
- 일반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각계각층의 참여 유도 필요
- 국제화 · 개방화와 지식 · 정보 · 문화 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국어 사용 환경의 오염과 왜곡 심화에 대한 개선 및 정비 대책 시급

### 추진 내용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방송 · 신문 등 언론기관, 국어 관련 민간 단체와 함께 국민 참여방식의 국어순화 활동 전개 및 관련 사업 지원
  - 국립국어원은 순화사업의 이념, 기본방향, 추진 방법 등 제시
  - 국어심의회의 '국어순화분과위원회'의 조사 및 연구 활동 강화
  - 공공기관 등의 국어 순화사업 적극 지원

• 국어순화자료집의 정기적 발간, 보급 확대
 – 분야별 '우리말 다듬기 자료집'
 – 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집, 외래어 순화 자료집 등

## 4-2 대중 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 현황과 필요성

• 방송 3사(MBC, KBS, SBS)와 방송언어 공동연구 협약체결('05년)
 – '뉴스 보도문의 화법'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MBC)
 – '국어사랑 공익광고' 제작, 방송(KBS)
 – 방송언어 교육과정 및 교재(글쓰기, 화법, 발음) 개발(MBC)
 – 방송의 경어법 개선에 관한 연구 수행(SBS)
 – '국어홍보대사' 임명 및 활용(KBS),
• EBS와 방송언어 공동연구 협약체결('06년)
 – 국제결혼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방송
• 'TV뉴스 문장 쓰기' 출간, 보급('06년)
• 신문 · 방송 · 잡지 ·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므로(법 제15조 제2항), 공익성 높은 방송프로그램 개발 등 언론기관의 자체 역량 강화 필요
• 신문 · 방송 등 매체언어별로 특성화한 정부 · 언론 공동사업 개발 필요

### 추진 내용

• 방송언어 연구 사업 및 국어의식 고양 사업 지속 추진
 – 방송 표준발음 연구, 공익광고 및 교양물 제작
 – 방송 화법 연구, 국어의식 관련 교양물 제작
 – 방송 보도기사 연구, 국어 소재 오락물 제작
 – 청소년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개선방안 연구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신문기사 순화를 위한 신문사 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 언론기관 종사자의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국어문화학교 방송언어 및 신문언어 바로 쓰기 교육과정 설치
• '방송언어 및 신문언어 연구 총서' 발간, 보급

## 4-3 신문 · 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 개선

### 현황과 문제점

• 신문 · 방송 · 인터넷 등 대중매체 언어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 관행 개선 필요

☞ 일간신문 10종과 방송 3사,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언어표현 조사 결과 ('06년, 국립국어원)

•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성별 · 인종 · 지위 · 지역 등) 또는 약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비객관적인 언어 사용으로 사회적 문제 야기
• 언론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자율적 순화 기능 제고 필요

### 추진 내용

• 신문사 · 방송사 등 언론기관과 협력체제 강화
• 국어순화운동 민간단체의 감시 활동(모니터) 지원
• 대중매체의 구체적 언어 표현 관행 조사 실시
– 장애인 차별, 성 차별, 인종 · 외국인 차별, 지역 차별, 사회적 지위 차별
– 주관적, 선정적 표현 등 비규범적 언어 관행
• 문제 언어표현에 대한 순화 용어 연구, '언론매체의 언어 순화집' 발간, 보급

## 4-4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 체계 구축

### 현황과 필요성

•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에서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을 산발적으로 추진
• '21세기 세종계획' 사업에서 1998년부터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용어 정비작업 실시
• 전문용어 통합 관리를 위한 '전문용어지원시스템' 개발('06년)

• 사회 각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용어의 난립과 교육, 번역, 상거래 등에서 혼란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 초래
  – 용어 통일을 위한 '전문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필요
  – 전문용어의 일원화된 통합 관리를 위해 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체 구성 필요
  – 전문용어의 정비 및 표준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보급 체계 필요

### 추진 내용

• '국가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구성, 운영(법 제7조, 시행령 제12조)
  – 각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총괄하는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 '전문용어 정비지침' 협의
  –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에 '전문용어표준화센터'를 설치, 각 중앙행정기관과 민간 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처리
  – 전문용어의 "수집 → 정비 → 심의 → 표준화 → 보급"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제 구축
• 전문 용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문 용어 자료 기지'(데이터베이스) 구축
• 표준화 방법론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 용어 정비 지침' 마련
• 정비한 전문 용어를 교과서, 법률안 등에 반영하기 위한 보급 체계 구축

## 4-5 공문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표현 개선

### 현황과 문제점

•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법 제14조) 국어 사용의 모범을 보여야 하나, 외래어 · 외국어의 남용 등 비규범적 언어표현 관행 상존
  ☞ 27개 중앙 행정기관 및 16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홈페이지 국어 사용 실태조사 결과('06년, 국립국어원)
• 중앙 행정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의 국어책임관 지정(법 제10조, 제22조)
  – 제1차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개최('06. 5월)
  – 제1차 광역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06. 9월)
  – 안내서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행, 배포
  – 국어책임관 전용 홈페이지 개설, 운영('06. 9월)

- '공문서 바로 쓰기' 등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국어강좌 개설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01년 이후 7,971명 수강('06. 11월)
  - 공무원의 연간 교육인원(1,300명)은 교육시설 및 운영인력 부족으로 수요 충족에 크게 미흡
  - 실제 공문서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교육 미흡
- 국어책임관 업무 담당부서 및 보직 지정의 합리성과 운영의 효율성 검토 필요
  - 홍보담당 부서장이 아닌 국어 관련 실제 업무 담당자로 국어책임관 지정
  - 국어책임관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어 관련 연구직 또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 필요

### 추진 내용

- 국어책임관 지정 및 운영제도 보완(국어기본법 개정 등)
-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국어책임관 등의 구체적인 업무지침 및 교육자료 개발, 배포
- 국립국어원 '국어 전문교육과정 및 심화과정' 증설, 운영
- '공문서 바로쓰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강사 지원
  -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공무원교육원
-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 용례 검색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확대, 운영

## 4-6 교과서, 법령문 등의 감수제도 정착

### 현황과 문제점

- 국어기본법의 제정으로 국회, 정부 부처 등의 국어 관련 감수 의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법 제18조, 제25조)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사무처, 법제처 등의 법령 문장 감수 요청 급증
- 법무부 소관 법령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감수를 위해 업무 협정 체결('02. 3월, 법무부)
- 2,500여 종의 교과서 감수를 위해 업무협정 체결('06. 5월, 교육인적자원부)

- 공공언어의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의 핵심이 되는 교과서와 국가 공공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법령문의 정비 시급
- 교과서 및 법령문의 감수제도 정착을 위한 국립국어원의 전담부서와 인력 미비

## 추진 내용

- 교과서 및 법령 제 · 개정안에 대한 감수제도의 정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 체제 강화 (감수 협의 이행 등)
- 교과서, 법령문의 감수 업무를 위한 기구 및 인력 확보

# 05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

[ 추진목적 ]

- 국가 경쟁력의 바탕인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어능력 검정시험'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 도모
- 지역의 국어상담소 육성과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어 사용 능력 향상 도모

## 5-1 국어능력 검정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

### 현황과 필요성

- 국어능력 검정 모의시험 2회 실시
  -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 '05. 8월, KBS 주관)
  - 제2회 국어능력인증시험( '05. 11월,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주관)
- 국어능력 검정시험 2회 실시
  - 제1회 국어능력인증시험( '06. 9월,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주관)
  - 제2회 한국어능력시험( '06. 10월, KBS 주관)

☞ ① 예상 학력이 고졸 정도인 국민 중, 국어능력 검정을 희망하는 지원자에 대한 제한 평가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능력 등)

② 합격률(급별 합계) : 56.91%( '06. 9. 24. 시행,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주관)

- 1급(0%), 2급(0.16%), 3급(4.97%), 4급(21.5%), 5급(30.28%)
- 급 외(탈락자) : 43.08%

- 국민의 국어 능력의 점진적 향상과 검정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시험제도의 확대 시행방안 연구 필요(법 제23조)

### 추진 내용

- 검정시험의 내실화와 타당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심층 연구 수행
  - '국어능력 검정시험제도' 시행과 관리의 안정적 기반 마련
  - 출제방법, 평가기준 마련 등 국어 능력 평가방법론 개발
- 검정시험 횟수 확대(연 2회 → 연 7회)
- 공공기관과 협조, 채용시험 · 승진시험 등에 전형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정시험제도의 확대와 검정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홍보 동영상 제작, 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 실시
  -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언론기관, 민간기업 등

## 5-2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 활용

### 현황과 필요성

- 국민의 어휘력 신장을 위한 토대인 '말뭉치 구축사업' 시행
  - 300만 어절 균형어휘 말뭉치 구축('02년)
  - 80만 어절 초등 교과서 어휘 말뭉치 구축('05년)
  - 50만 어절 초등 작문 어휘 말뭉치 구축('05년)
- 인간의 인지 · 심리발달 단계를 고려한 기본어휘 선정 방법론 지속 개발 필요
  - 교과서 편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어휘 자료 확보

### 추진내용

- 학습자의 인지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정에 따른 어휘목록 조사 및 선정 사업 지속 시행
- 초등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 학년별 기본어휘 평정 작업 등

## 5-3 「국어상담소」의 지역별 문화 거점화

### 현황과 문제점

-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위해 '국어상담소' 지정, 운영('06년, 법 제24조)
- 국어상담소 지정 현황
  - 전국 11곳 : 서울 3, 충청 3, 경상 4, 전라 1개소
  - 미지정 : 제주, 강원, 전북 등 3곳('07년 추가 지정 예정)
  - 인력 : 책임자 1명, 상근 2명 및 비상근 상담원 등 3~4명
  - 상담내용 : 어문규범, 글쓰기, 언어예절 등 국어 전반
- 상담소 운영의 문제점
  - 역량 있는 상담원 부족
  -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이용 실적 부진
  - 수요자 중심의 맞춤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미비

### 추진 내용

- 국어상담소의 지역별 확대 지정(시 · 군 · 구까지)과 지원
  - 광역 자치단체별 국어상담소를 '국립국어원 분원'으로 육성
- 국어상담소의 운영 정착 및 역량 강화 지원
  - 국어상담소 업무지침 마련
  - '국어상담사 제도' 시행
  - 상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교육 실시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자체 수익 창출
  - 국어 사용 소외계층을 위한 국어교양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국어 능력 증진을 위한 작문 · 토론대회 등 각종 경시대회 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활동 추진(국어책임관 업무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해당 지역 국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도시 언어경관 조성사업 등 추진

# 06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 추진목적 ]

- 국민의 언어 사용 실태와 언어의식 변화 양상을 제때에 파악하여 국어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확보
- 집단별, 계층별 기층문화 생활어 등의 조사를 통해 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증대하고, 민족 생활어의 보존과 발전 도모
- 급격히 소멸되어 가는 민족어의 권역별 지역어 조사를 통해 다양성을 보존하고 국어 연구와 문화 활동 자료로 활용

## 6-1 국어 사용 실태조사

### 현황과 필요성

- 사회적 변인에 따른 국민의 언어 사용 추이를 파악, 국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05년부터 국어사용 실태조사 시작(법 제9조)
  - 국어 의식 조사, 국어 사용 환경 조사, 청소년 언어 사용 조사,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실태조사 등 수행
-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사 방법론 개발 필요
- 조사 결과를 국어정책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학술조사와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병행 필요
- 국어 사용 실태의 현상과 국민의 국어의식 변화 양상을 제때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조사 필요

### 추진 내용

- 국어 능력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방법론 연구 수행( '07~ '08년)
  - 연구부문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등
  - 국어 능력 향상책 마련 및 실행( '09년~ '11년)
- 교육 수준별 · 연령별 언어 사용 조사(매년)
  -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 사용 등

• 국어 사용 환경조사(3년 주기)
  –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언어 영향 등
• 국어 의식 조사(5년 주기)
  – 경어 · 외래어 · 표준어 사용 의식
  – 국어정책 및 국어교육에 관한 인식 등

## 6-2 민족 생활어 및 직업 생활어 조사

### 현황과 필요성

• 광복 이후 전통 문화어와 집단별 · 계층별 기층문화 생활어 등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전혀 없는 상황
• 민족 생활어의 발굴과 보존을 통한 국어의 문화적 가치 증대

### 추진 내용

•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 현장의 어휘조사 실시
  – 6개 권역 : 서울 ·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 조사 내용
    ① 전통 기층문화 생활어 조사 : 의식주, 농업 관련, 문화 · 관혼상제 관련 어휘( '07~ '11년)
    ② 직업 생활어 조사 : 상인 집단 관련 어휘( '12~ '16년)
• 민족 생활어 용어집 발간 및 자료 관리 체계 구축
  – 자료기지(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용 웹하드(대용량 파일 내려받기 창고) 개설

## 6-3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 현황과 필요성

- 권역별 지역어 조사 실시
  - 조사항목 선정 및 질문지 작성, 기초조사('04년, 12지점)
  - 국내 9개 지점 조사 및 전사('05년~ '06년)
- 민족생활 어휘의 다양성 보존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급격히 소멸되어 가고 있는 지역어의 지속적 조사와 보존 대책 필요

### 추진 내용

- 국내 지역어 및 국외 한민족 지역어 현지 조사 확대(5개년)
  - 국내 : 권역별 주요 지점
  - 국외 : 중국, 중앙아시아 등
- 조사 음성 자료의 분절 및 전사
- 국내외의 '지역어 총서' 발간, 보급
- '지역어 인터넷 자료 기지'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12년 이후)

# 07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 추진목적 ]

- 국어지식 및 민족문화를 집대성한 총체적 국어사전의 지속적 정비로 국민의 언어 능력 향상과 국어문화의 발전 토대 제공
- 사전 편찬자와 사용자와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상시적인 개방형 사전 편찬 체제 확립
- 다양한 언어생활의 수요와 요구에 맞춘 특성화된 사전 편찬으로 국민의 언어생활의 발전 및 편의 도모

## 7-1 민족문화 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 보완

### 현황과 문제점

- '92~ '99년간 국어지식과 민족문화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보급
- '08년 인터넷 제공(웹 서비스) 목표로 "표준국어대사전" 보완 중
- 사전의 상시 편찬 체제 미비로 정비 · 보완 작업 지연
- 급변하는 언어 환경의 반영과 국민의 다양한 국어지식 수요를 충족시킬 쌍방향적 사전 편찬 체제 필요

### 추진 내용

- 지속적인 내용 개선과 정보 추가가 가능한 개방형 사전 설계
  - 사전 수록 내용의 '망라성, 정확성, 권위성' 확보
- 사전 편찬자와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여 상시적인 정비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전 편찬 체제 마련
  - 표준국어대사전 정비 및 보완('07~ '08년)
  - '사전편찬실' 설치, 상시적 편찬 체제 확보('08년~ )

## 7-2 신어조사 지속 실시

### 현황과 필요성

- '94~ '95년, '00년 이후 매년 '신어 자료집' 발간
- '05년부터 기존 '신어 사용 추이' 조사 결과 발간
- 제한된 예산에 따른 조사 범위 축소와 조사 방법론의 한계 발생
-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언어변화 양상을 파악, 새로운 단어 및 용법 제시 필요

### 추진 내용

- 신어 및 사용 추이 조사 지속 실시(매년)
- 새로운 방법론 개발, 조사 범위 확대
- 신어 용례집 등 언어자료집 발간, 보급

## 7-3 다양한 맞춤형 사전 편찬

### 현황과 필요성

- 전문어, 문학어 등을 다룬 '분야별 전문사전' 부족
- 유의어, 반의어, 외래어, 분류사전 등 '어휘 특성별' 전문사전 부족
- 다양한 맞춤형 사전 편찬을 통한 기초연구 및 자료 구축으로 국어문화 발전의 기반 마련

### 추진 내용

- 다양한 언어생활의 수요와 요구에 맞춘 유의어, 반의어 사전과 외래어, 문학어 사전 등 연차별 편찬
  - 편찬 위원회 구성, 편찬 사전 확정 및 설계( '08~ '09년)
  - 유의어, 반의어 사전과 외래어, 문학어 사전 편찬( '10~ '13년)

# 08 국어 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 추진목적 ]

- 국어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보급체계 구축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강화
- 구축되고 있는 국어정보 자료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 국어 정보 종합(포털)사이트의 개발
- '21세기 세종계획'의 성과물을 활용하여 한국어의 어휘 의미망을 구축, 더욱 편리한 국어생활의 도구 제공과 국어 정보화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8-1 국어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현황과 필요성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내 '국어정보검색시스템' 구축 · 운영('99년)
- '디지털 한글박물관' 구축('01년)
- '한국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국어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06. 11월)
  - 표준국어대사전 관리시스템 개발('06. 12월)
- 이미 구축된 다양한 정보화사업 성과물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어 정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어 정보의 관리 및 국내외 보급체계 구축을 통한 '국어 정보 보급 중심'(국어정보관리센터)으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법 제16조)

### 추진 내용

- 국어유산을 비롯한 각종 국어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어정보 통합관리 체계' 구축
  - '국어 정보 통합관리 및 검색시스템' 개발('07년)
  - 국어정보관리센터 기능 확대('08년)
  - 국어 정보 종합(포털)사이트 구축('09년)
- 한글문화 유산의 보존과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한글박물관' 확충 운영
- 한국어통합관리시스템, 21세기 세종계획, 디지털 한글박물관 등 주요 국어정보 시스템, 한국어교육 및 학습사이트가 연계되는 국어정보 종합(포털)사이트 개발, 운영

• 국어정보의 안정적 구축과 보급 및 보존을 위한 효율적온 · 오프라인(직결 · 비직결) 관리시스템 구축

## 8-2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 현황과 필요성

• '21세기 세종계획' ('98~ '07년) 추진으로 전자사전 개발('05년, 70만 어휘)
• 전자사전의 효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어휘 의미망' 구축 필요
 – 한국어의 어휘 의미를 보여 주는 대규모 의미망사전 개발 필요
 – 정보처리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의미망사전의 개발은 규모와 성격상 국가적인 지원 필요
• 민간 및 학계의 자연언어 처리 분야의 '분류 어휘집'(시소러스), '의미 분류체계'(온톨로지) 연구 등 유사사업을 통합할 필요성 제기

### 추진 내용

• 한국어 어휘 의미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08년)
• 한국어 어휘정보, 의미정보 분류체계 구축
 – 한국어 어휘정보 분류체계 구축('09년)
 – 한국어 의미정보 분류체계 구축('10년)

## 8-3 국어 능력 향상 학습시스템 개발

### 현황과 필요성

• 2억 어절 말뭉치 등 국어 기초자료 구축
• 전자사전 개발('05년, 70만 어휘)
• 한민족언어정보화 사업 추진
 – 남북한 언어 비교사전 발간('98년 이후)
 – 어문규범 검색시스템 등 프로그램 개발
• 국어 문장의 작문을 자가 진단하고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수단 제공 필요
• 지역어 사용자나 외국인이 표준어 발음 및 억양을 배우고 교정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수단 제공 필요

• 영화 · 연극 · 드라마 연기자의 지역어 사용 능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지역어 발음 및 억양 학습 수단 제공 필요

### 추진 내용

• 문장력 평가 및 문장 교정 시스템 개발
  – 오류 문장 및 명문 자료 기지(데이터베이스), 오류별 교정안 등
• 어휘력 평가 및 학습 시스템 개발
  – 수준별 어휘목록, 분류 어휘집(시소러스), 용례 자료기지(데이터베이스) 등 구축
  – 평가용 문제은행 구축, 어휘 학습시스템 개발
  – 문장 교열시스템 개발, 어휘 학습시스템, 발화 평가시스템 개발
• 음성 표준어 습득 및 교정시스템 개발
  – 비표준 발음 수집 및 분류 자동화 시스템, 교정안 개발 등

## 8-4 한국어의 다양성 체험관 설립

### 현황과 필요성

• 서울말 낭독체 발음 말뭉치 발간('03년)
•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조사 진행 중('05년~)
• 표준어 중심정책으로 인하여 국어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인식이 부족한 상태
• 한국어의 다양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분류체계에 따른 전면적인 자료 수집으로 우리말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도 필요
• 국민이나 외국인이 표준어 및 각 지역어 등의 글말, 입말, 대화체, 낭독체 등 제반 변이형의 특징을 손쉽게 비교 · 습득하게 함으로써 다원주의적 언어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초적 이해 제고 필요

### 추진 내용

• 전체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시스템 설계('07년)
  – 한국어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내적 분류체계 연구
  – 지역적 기준, 사회적 기준, 국어사적 기준, 음성형태 기준, 문체 기준 등
• 확정된 기준에 맞는 자료 수집 및 가공, 자료 기지 구축('08년)
  – 음성 파일, 동영상, 사진, 서적류, 필사물 등

- 웹사이트 개발 착수, 현장 체험관 마련( '09년)
- 웹사이트 서비스 개시( '10년)
- 현장 체험관 개관( '11년)

## 8-5 국어전문도서관 구축

### 필요성

- 과거 · 현재 · 미래의 국어자료를 수집, 국어 지식정보로 가공 · 통합하여 서비스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 및 연구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
-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모든 자료를 '국어전문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요구에 적극 대처

### 현황과 문제점

- 약 4만 건의 국어 관련 자료 수집( '06. 11월 현재)
  - 자료실 홈페이지를 통한 대출 정보 제공 등 열람 서비스
- 고서, 개화기 도서 등 전적자료 미비로 이용자 만족도 저하
- 온라인 형태의 국어정보 수집체계 미비

### 추진 내용

- 국어 자료수집 및 자료기지(데이터베이스) 구축( '07 ~ '11년)
  - 고서, 개화기 도서에서 현대물까지 망라
- 온라인 국어자원 수집 및 보존을 위한 웹 자료관리 창고(웹 아카이빙) 구축( '08년)
- 국어 관련 자료의 소장처, 서지 정보 등 관리용 데이터 수집( '09년)
- 국어 관련 자료 목록집 발간( '10년)
- 국어 관련 자료의 활용체계 구축( '11년)

# 09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 추진목적 ]

- 훈민정음을 비롯한 한글 문화유산을 종합 정비하여 대중화하고 전 세계 보급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 선양
- 고전 자료의 판각 및 복원을 통해 우리말 역사 자료의 생활 문화적 가치 증대
- 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아름다운 언어경관 조성으로 도시 환경 정비에 기여
- 한글의 문화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화 ·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한글 산업)의 개척과 고용 창출

## 9-1 훈민정음 번역 등 한글 문화유산 보급

### 현황과 필요성

• '훈민정음', '삼강행실도' 등 23권 해제 발행('03~'06년)
  – 훈민정음 등 한글 문화유산을 문화자원화하여 문화상품으로 개발 필요
  – 한글 문화유산의 번역과 전 세계 보급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 선양

### 추진 내용

• 한글 관련 문화유산 문헌 실태 조사
•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30개 언어)과 전 세계 보급
• 언문지 등 문화유산 역주, 해설 원고 작성 및 출판 · 보급
• 외국인의 한글 및 한국어 연구 성과 발굴, 번역 출판(문법서, 논저 등)

## 9-2 우리말 역사자료의 수집과 정리

### 현황과 필요성

• 100대 한글 문화유산의 종합적 정비
  – '규장전운', '이륜행실도', '청구영언', '구운몽', '규합총서' 등
• 15세기 이후 목판본 인쇄 자료의 판각 및 복원

– 용비어천가(서문~5장 일부) 판각 및 복원( '06년)
• 문헌자료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해제하여 목판본의 목판 원형의 체계적 복원 및 보존 작업 필요
• 한글 인쇄문화의 미술적 가치 재현으로 목판 인쇄 등 민속사 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

### 추진 내용
• 우리말 역사 자료 판각 및 복원사업 지속 추진
– 훈민정음 판각 및 복원( '07년)
– 용비어천가 판각 및 복원( '08년)
– 석보상절, 월인석보 판각 및 복원( '09년)

## 9-3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

### 현황과 필요성
• 디지털 한글 박물관 구축( '01년~)
• 역사 말뭉치 구축(21세기 세종계획, '98년~)
• 우리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일부 문헌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입력되어 있어 언어 변천을 참고할 수 있는 시대별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 필요
– 우리말 자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우리말 관련 문헌의 전체 현황 정리 필요
– 이미 구축된 자료의 통합 정비 및 보완 필요

### 추진 내용
• 100년 단위로 천만 어절 규모의 우리말 기초 말뭉치 구축
• 관련 다매체(멀티미디어) 자료의 수집 및 자료기지(데이터베이스) 구축
– 중세 국어 말뭉치 및 이미지 자료 구축( '08년)
– 근대 국어 말뭉치 및 이미지 자료 구축( '09년)
• 시대별 어휘 및 문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10년)
• 시대별 문헌 총람 자료 구축( '11년)
• '시대별 우리말 정보은행' 지원 시스템 개발( '12년~)

## 9-4 도시 언어경관 정비 및 조성

### 현황과 필요성

- '언어경관 조성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06년)
- '언어경관 조성 시범사업' 추진('06년, 국어상담소 10개소)
- 간판, 안내판을 경제적 효율성 위주에서 문화적 가치도 고려하는 측면으로 인식 전환 필요
  - 도시 언어 환경의 문화적 가치 증진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경관 조성(국어, 건축, 조경, 시각디자인 등의 공동 작업)
- '언어경관 조성 시범지구'의 간판, 안내판 등의 실제 정비가 최종 목표이지만 막대한 예산 소요
- 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원활한 예산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자금 투자 유도 필요

### 추진 내용

- 아름다운 언어경관 조성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지침 마련('07년)
- 언어경관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시범지구 운영('08년)
- 언어경관 조성 여론조사, 우수지역 포상 및 홍보, 시범지구 확대, 지침 보완('09년~)

## 9-5 한글의 산업화 지원

### 현황과 필요성

- 한글 이미지화 및 산업화 관련 연구 수행('06년)
- 한글 글꼴 공모전 지원('06년 한글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한글의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외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징으로 한글을 널리 알림
- 한글 상품 개발체계의 일원화와 관련 부처 및 전문가 협의체 구성 필요
- 한글 상품의 상업성 개발에 기업 및 전문 디자이너의 관심과 참여 유도 필요

## 추진 내용

- 한글 이미지화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
- 한글 이미지화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 한글 '우수 디자인 마크' 제정, 한글 이미지화 인기 상품전 개최, 관련 홈페이지 개발 · 운영
- 한글상품 판매 · 홍보전략 개발
- 국외 '한국어 마을' 설계 공모, '한국어 마을' 설치 · 운영 지원

# 10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추진목적 ]

- 국어정책 홍보의 다양화와 홍보자료의 보급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어문화 확산
- 정책사업의 수혜자, 이해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상승효과를 통한 정책의 품질 향상 도모

## 10-1 국어 정보지 발간 및 보급 확대

### 발간 목적

- 국민의 언어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양자료 제공
- 국립국어원의 활동과 현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국어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
- 국어학 분야의 연구 성과와 국어 관련 활동을 정리하여 소개

### 발간 현황

- 새국어생활 : '91년부터 연 4회(통권 63권)
- 새국어소식 : '98년부터 '06년 1월까지 월 1회(통권 90호)
- 온라인 소식지 : '05년 7월부터 월 1회(통권 13호)
- 국어 연감 : '92년부터 연 1회
- 홍보책자(국립국어원 요람 등) : 연 1회

### 추진 내용

- '새국어생활' 국내외 보급 확대('07년부터)
- '국어연감' 온라인 서비스 시작('08년부터)
- 다양한 영상홍보물 제작, 활용

## 10-2 국어정책 홍보 맞춤 서비스체제 구축

### 필요성

- 국어정책과 관련 시책을 체계적 ·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품질의 정책 사업 추진 기반 조성
- 국어정책 및 시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추진 내용

- 고객 중심의 정책 맞춤 서비스(PCRM) 개발(일반국민, 학계, 언론계, 한국어 교육계 등)
- 체계적 홍보 활동을 위한 홍보 전담부서 설치 및 홍보전문가 유치
- 국어정책 및 시책에 관한 홍보 영상물과 화보집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매체 개발, 보급

## 10-3 국어생활 기획총서 발간

### 현황과 필요성

- 지역어 구술 자료 9권, 서울토박이말 구술 자료 등 지역어 총서 발간 추진('06년)
- 국어 관련 사업 결과물을 정비, 가공한 후 기획 출판하여 사업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함

### 추진 내용

- '국어원에 물어 보았어요', '국어정보화', '한국어 보급', '국어 문화유산', '아동을 위한 만화책' 등 연속간행물 발간
- 총서 및 연구결과 보고서 등 기획 출판(매년)

## 10-4 국어운동단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 현황과 필요성

- 매년 민간 보조 사업을 통해 국어운동단체 운영 지원(법 제21조)
- 국어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체제 구축 필요
- 국어운동단체에 각종 자료 제공, 행사 참여 및 자원 봉사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국어 정책 집행과정 참여 유도
- 국어정책의 적극적 감시자, 지지자, 후원자 확보로 바람직한 국어정책 실현에 기여

### 추진 내용

- '민간 국어운동가 연합단체' 설립 및 지회 설치, 지원
  - 국어상담소 기반, '국어를 사랑하는 모임(가칭)' 창설('07년)
  - 정책 맞춤 서비스와 연동하여 회원 수 확대('08년)
- 국어상담소와 민간 국어운동단체 연계 활동 지원
- '단체별 특화 활동' 지원, 정책집행 과정에 참여 유도

## 10-5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 현황과 필요성

- 한글날 '국경일' 제정('05. 12월)
- 560돌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06. 10. 9.)
  - 정부 기념행사(행정자치부 주관)
  - 경축행사(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국어단체 주관)
    - · KBS 열린 음악회, 금난새 음악회, 공연행사, 각종 경시대회, 전시회 등
    - · 기념주화, 기념우표 발행, 포스터 제작 · 배포
- 행사경비의 제약으로 소수 전문가와 단체에 국한되어 치러온 한글날을 국민과 함께 하는 대대적인 국경일 행사로 승화 필요

## 추진 내용

- 한글 창제 정신을 기리고 우리 국어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각종 경축 행사 및 기획 행사 개발, 개최
- 국어운동단체의 참여 확대 및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
  - 한글과 우리 문화('07년)
  - 세계 속의 한국어 잔치('08년)
  - 세계의 언어와 세계의 문화 잔치('09년)

# Ⅵ. 추진 조직 체계

# Ⅵ. 추진 조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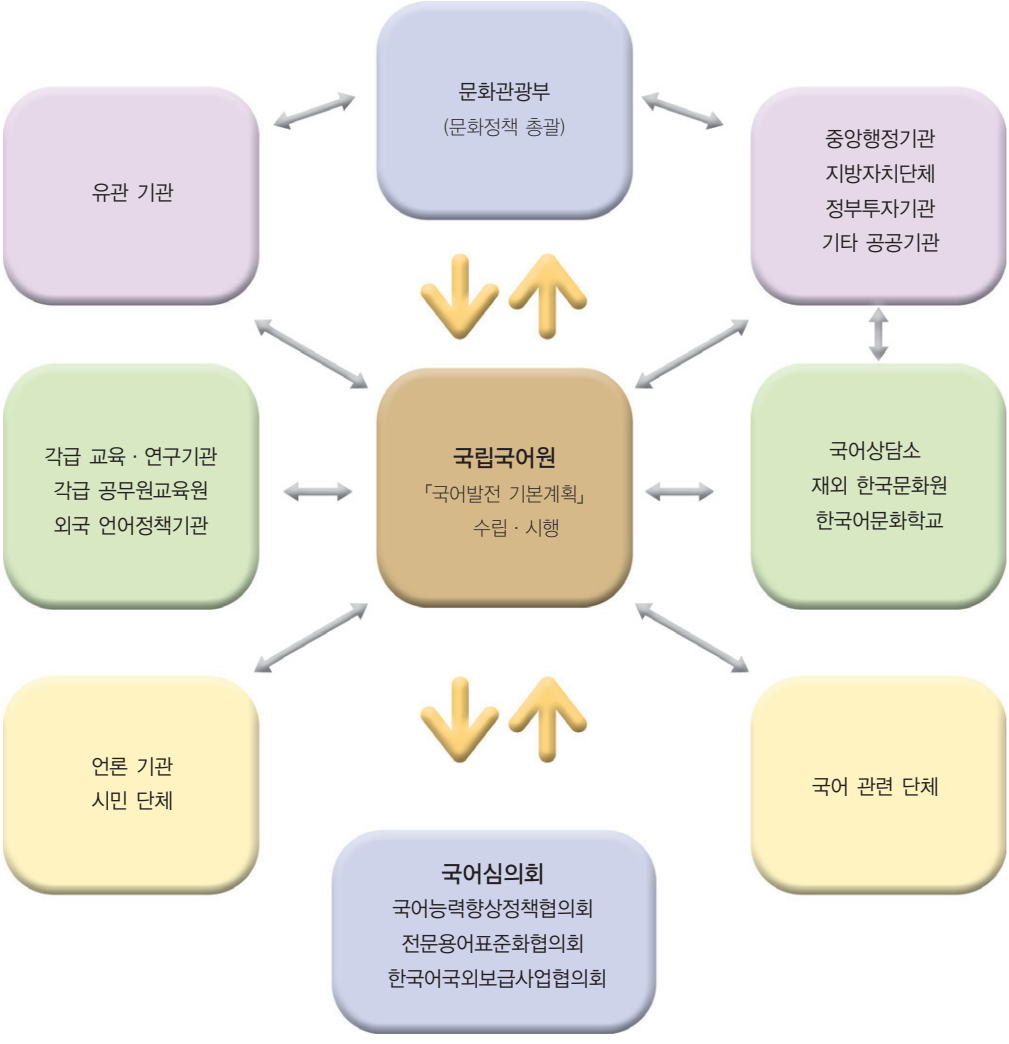
문화관광부
(문화정책 총괄)
유관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
각급 교육 · 연구기관
각급 공무원교육원
외국 언어정책기관
국립국어원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 시행
국어상담소
재외 한국문화원
한국어문화학교
언론 기관
시민 단체
국어 관련 단체
국어심의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

# Ⅶ. 연차별 재정 투자 계획

# Ⅶ. 연차별 재정 투자 계획

(단위 : 백만 원)

| 추진과제 \ 연도별 | | 재 원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계 |
|---|---|---|---|---|---|---|---|---|
| 중점추진과제 |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 국고 | - | 800 | 1,570 | 1,720 | 1,900 | 5,990 |
| |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 국고 | 2,000 | 4,425 | 5,775 | 7,500 | 7,500 | 27,200 |
| |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 국고 | - | 500 | 1,500 | 2,500 | 2,500 | 7,000 |
| | 소 계 | 국고 | 2,000 | 5,725 | 8,845 | 11,720 | 11,900 | 40,190 |
| 10대추진과제 |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 국고 | 195 | 540 | 650 | 755 | 1,100 | 3,240 |
| | 남북 언어교류 확대 및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 국고 | 185 | 230 | 380 | 435 | 550 | 1,780 |
| |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 국고 | 950 | 1,050 | 1,180 | 1,270 | 1,600 | 6,050 |
| | 국어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 국고 | 590 | 1,100 | 1,110 | 1,220 | 1,220 | 5,240 |
| |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 여건 조성 | 국고 | 620 | 630 | 740 | 740 | 740 | 3,470 |
| | 언어사용의 다양성 조사 | 국고 | 967 | 1,000 | 1,200 | 1,300 | 2,000 | 6,467 |
| |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 국고 | 420 | 490 | 1,390 | 1,590 | 1,590 | 5,480 |
| | 국어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 국고 | 1,950 | 2,000 | 2,500 | 3,500 | 5,500 | 15,450 |
| |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 국고 | 400 | 560 | 940 | 1,090 | 3,400 | 6,390 |
| |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국고 | 623 | 872 | 900 | 905 | 910 | 4,210 |
| | 소 계 | 국고 | 6,900 | 8,472 | 10,990 | 12,805 | 18,610 | 57,777 |
| 합 계 | | 국고 | 8,900 | 14,197 | 19,835 | 24,525 | 30,510 | 97,967 |

참고자료

# 각국의 언어 보호 및 발전 정책

## 프랑스

(1)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1994) 제정
- 상업적 거래와 광고에서 프랑스어 사용 의무화
-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2) 프랑스어 총대표부 운영(1989~)
- 1989년 문화부 소속 기구로 창설
- 프랑스어의 보급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활동을 조율하고 장려
- 각 지역의 언어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2001년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 총대표부'로 개칭

(3) 프랑스어권 정상회의 개최(1986~)
-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목적으로 1986년부터 2006년까지 11회 개최
- 프랑스어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 모색

## 캐나다(퀘벡주)

언어정화법 제정(1988)
- 사복 언어 경찰관 편성 : 필요 이상 외국어 사용 시 벌금 부과
- 영어간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프랑스어의 1/3 크기로 제한

## 폴란드

폴란드어법 제정(2000)
- 행정, 법률, 상업, 교육 분야에서 폴란드어 사용을 의무화
-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 아일랜드

공용어법 제정(2003)
- 영어와 아일랜드어에 공용어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 행정, 교육, 언론 등 분야에서 아일랜드어의 실질적 사용을 목표로 함

## 포르투갈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 운영(1996~)
- 포르투갈어 사용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연대 강화
- 포르투갈어의 진흥과 보급을 위한 활동 전개

## 중 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제정(2000)
- 보통화와 규범 한자의 사용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제정
- 공적 언어 사용에서 강제적 성격이 강함

## 참고자료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

| | |
|---|---|
|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등 22개 부 · 처, 국세청 등 16개청 |
| 지방자치단체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 참고자료 국어상담소 지정 현황

| | |
|---|---|
| 서울 · 경기도 지역 3개소 | •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br>•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상담소<br>• 한국방송공사 국어상담소 |
| 충청도 지역 3개소 | • 상명대학교 국어상담소<br>• 청주대학교 국어상담소<br>• 충북대학교 국어상담소 |
| 경상도 지역 4개소 | • 경북대학교 국어생활상담소<br>•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br>•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상담센터<br>•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센터 |
| 전라도 지역 2개소 | •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부설 국어교육원<br>•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
| 강원도지역 1개소 | • 강원대학교 국어상담소 |
| 제주도 지역 1개소 | •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 |

참고자료

# 국어심의회 위원 명단

| 국어순화분과위원회(21명) | 언어정책분과위원회(17명) | 어문규범분과위원회(24명) |
|---|---|---|
| 2006. 7. 1.~2008. 6. 30. | 2005. 9. 11.~2007. 9. 10. | 2007. 2. 1.~2009. 1. 31. |
| 김수업(전 대구가톨릭대) | 홍윤표(연세대) | 손희하(전남대) |
| 강영봉(제주대) | 권재일(서울대) | 강옥미(조선대) |
| 강재형(MBC) | 김정수(한양대) | 강정희(한남대) |
|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 김정숙(고려대 국제어학원) | 김대현(전남대) |
| 구현정(상명대) | 김하수(연세대) | 김영일(계명대) |
| 권재일(서울대) | 남영신(국어문화운동본부) | 김정아(대전대) |
| 김동소(대구 가톨릭대) | 박동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김창식(안동대) |
| 김용수(교열기자협회) | 박영률(박영률출판사) | 김태엽(대구대) |
| 김진수(충남대) | 신지영(고려대) | 남기탁(강원대) |
| 김희숙(청주대) | 왕한석(서울대) | 리의도(춘천교대) |
| 박병철(서원대) | 이광석(경북대) | 민현식(서울대) |
| 심보경(한림대) | 이태영(전북대) | 박선자(부산대) |
| 유 협(SBS) | 이해영(이화여대) | 성낙희(숙명여대) |
| 이기갑(목포대) | 이희자(경인여대) | 손중선(대구교대) |
| 이대로(우리말살리기겨레모임) | 정현선(경인교대) | 송철의(서울대) |
| 이병운(부산대) | 최시한(숙명여대) | 오수경(한양대) |
| 장경희(한양대) | 허 훈(경남일보) | 유재원(한국외대) |
| 장소원(서울대) | | 이은영(경북대) |
| 지영서(KBS) | | 임용기(연세대) |
| 채 완(동덕여대) | | 전혜영(이화여대) |
| 홍사만(경북대) | | 최기호(상명대) |
| | | 최호철(고려대) |

〈부록〉

#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

#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

## 국어기본법

**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5. 7.27. 대통령령 제18973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 --- | --- |
| 5. "국어능력"이라 함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br><br>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 · 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br><br>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br><br>**제2장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br><br>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 하여야 한다.<br>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br>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국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br>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의 방향에 관한 사항<br>3. 국민의 국어능력증진과 국어사용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br>4. 국어정책과 국어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br>5. 국어의 선양과 국어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 |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 --- | --- |
| 6. 국어의 국외보급에 관한 사항<br>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br>8. 남북한 언어통일방안에 관한 사항<br>9. 정신 · 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 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br>10. 국어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br>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 ·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br><br>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br>②문화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br><br>제8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 --- | --- |
| 제9조(실태조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 국어의식 · 국어사용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br>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br>③국어능력 · 국어의식 · 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br>1. 듣기 · 말하기 · 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br>2. 경어(敬語) · 외래어 · 외국어 · 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의식에 관한 사항<br>3. 국어사용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br>가. 국민의 듣기 · 말하기 · 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br>나. 국민의 경어 · 외래어 · 외국어 · 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br>다. 신문 · 방송 · 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br>라. 가요 · 영화 · 광고 · 상호 및 상표 등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br>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br>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 --- | --- |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②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br>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br>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br>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br>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br>③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 · 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 |
|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 --- | --- |
|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문화 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항목 ·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br>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br>가. 어문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br>나. 어문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br>2.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br>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br>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br>②문화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 · 연령 · 성 · 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br>③문화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br>④문화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제13조(국어심의회) ①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br>②국어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br>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br>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br>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br>③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어 · 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제5조(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br><br>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국어심의회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br>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 --- | --- |
| ⑤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br>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언어정책분과위원회<br>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br>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br>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br>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br>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br>2. 어문규범분과위원회<br>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br>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br>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br>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br>마. 한자의 자형(字形)·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br>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br>3. 국어순화분과위원회<br>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br>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br>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③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br>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br>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 --- | --- |
| | 제9조(간사 및 서기) ①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
| | 제10조(수당 등) 국어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br>②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2.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
|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br>②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 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제16조(국어정보화의 촉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br>②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 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br>③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 --- | --- |
|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 · 관계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br>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 및 체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br>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br>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 · 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br>⑤문화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
|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 · 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 --- | --- |
|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br>②문화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br>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한국어교원 1급<br>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자<br>2. 한국어교원 2급<br>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br>나.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br>다.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br>3. 한국어교원 3급<br>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br>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 --- | --- |
|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교부한다.<br><br>제14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br>②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br>③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br>④문화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br>1. 비영리법인일 것<br>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br>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 --- | --- |
| 제20조(한글날) ①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범국민적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행한다.<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①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날 기념행사시에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 · 수상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 |
| 제22조(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br>③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로서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문화관광부에 둔다.<br>②정책협의회의 의장은 국립국어원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br>1.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 · 통일부 · 외교통상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노동부 · 여성가족부 및 법제처의 국어책임관<br>2. 그 밖에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에 관련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br>③정책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 --- | --- |
| | ④정책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협의회의 의장이 국립국어원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 | 제17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정책협의회는 정책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br>②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능력의 검정방법 · 절차 · 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국어능력의 검정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br>1. 듣기<br>2. 말하기<br>3. 읽기<br>4. 쓰기<br>5. 그 밖에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br>②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 시행 ·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br>1. 비영리법인일 것<br>2. 국어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br>3. 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br>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능력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 --- | --- |
| 제24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 ①문화 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 · 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상담소로 지정할 수 있다.<br>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어상담소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br>③문화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상담소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상담소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br>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상담소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국어상담소의 지정 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br>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전문인력을 갖출 것<br>가. 국어국문학 · 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 · 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 · 연구 · 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인<br>나. 국어국문학 · 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 · 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 · 연구 · 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상담원 2인 이상<br>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br>②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어상담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국어상담소 운영계획서<br>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br>③국어상담소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상담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5장 보 칙** | |
|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 --- | --- |
| 제26조(청문)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어상담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br><br>제27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br>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어관련 전문기관 ·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
| **부 칙** |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br><br>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br><br>제3조(공문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문서부터 적용한다.<br><br>제4조(어문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으로 본다.<br><br>제5조(국어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로 본다.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br><br>제2조(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2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br>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 |
| --- | --- |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장(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등록하여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할 수 있다.<br><br>제3조(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위촉받은 자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br><br>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3장(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4장(제14조 내지 제22조)을 각각 삭제한다. |

◆ 별표 1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제13조 제1항 관련) ]

| 연 번 | 영 역 | 과 목 예 시 |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필수이수 시간 |
|---|---|---|---|---|---|---|
| | | |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 부전공 | | |
| 1 | 한국어학 |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6학점 | 3학점 | 3~4학점 | 30시간 |
| 2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6학점 | 6학점 | | 12시간 |
| 3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24학점 | 24학점 | 9~10학점 | 46시간 |
| 4 | 한국 문화 |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 6학점 | 3학점 | 2~3학점 | 12시간 |
| 5 | 한국어교육 실습 |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 3학점 | 3학점 | 2~3학점 | 20시간 |
| | 합 계 | | 45학점 | 21학점 | 18학점 | 120시간 |

◆ 별표 2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방법(제14조 제2항 관련) ]

| 영 역 | 배 점 | | 시 간 | 방 법 |
|---|---|---|---|---|
| 별표 1의 제1호 | 90 | 120 | 100분 | 필 기 |
| 별표 1의 제2호 | 30 | | | |
| 별표 1의 제3호 | 150 | 180 | 150분 | |
| 별표 1의 제4호 | 30 | | | |
| | 300점 | | 250분 | |
| 구술시험 | 합격/불합격 | | | 면 접 |

[ 별지 제1호서식 ]

제 호

# 한국어교원 자격증

이 름
주민등록번호
자 격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직인)

1. 검정 종별
2. 법정 해당 자격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자격기준 제 호 목
3. 수여 조건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 별지 제2호서식 ]

(앞 쪽)

<table>
<tr><td colspan="5">국어상담소 지정신청서</td><td>처리기간<br>20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①성명(대표자)</td><td></td><td>②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③주 소</td><td colspan="4">(전화 : )</td></tr>
<tr><td colspan="2">④단체명 · 기관명</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⑤소 재 지(전화번호)</td><td colspan="4">(전화 : )</td></tr>
<tr><td colspan="2">⑥설립 목적</td><td></td><td>⑦설립 연도</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⑦지원 요망 사항 :</td></tr>
<tr><td colspan="6">「국어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상담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br><br>년 월 일<br><br>신청인 (서명 또는 인)<br><br>문화관광부장관 귀하</td></tr>
<tr><td colspan="6">구비서류 : 뒤쪽 참조</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 구비서류

1. 국어상담소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 처 리 기 간<br>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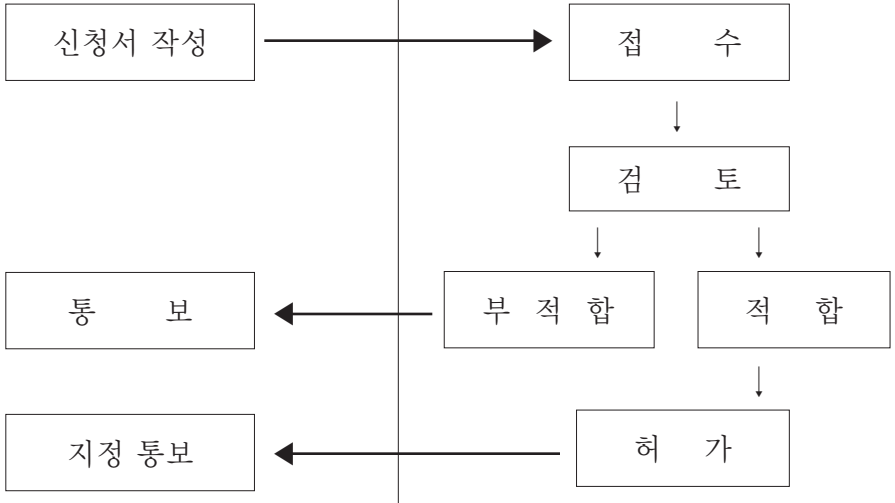

문화 창조 역량 강화와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 국어발전기본계획

2007년 3월 28일 인쇄
2007년 3월 29일 발행
발행인 이상규
발행처 국립국어원
157-857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
전화 (02) 2669-9775
전송 (02) 2669-9777
누리집 http://www.korean.go.kr
인 쇄 크리홍보(주)
전화 (02) 737-5377